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22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5963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017구합57332(병합)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2017구합60161(병합)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redacted]
피 고	1. [redacted]세무서장
	2. [redacted]지방국세청장
	3.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8. 12. 7.
판 결 선 고	2019. 2. 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22

청 구 취 지

2017구합59635: 피고 [redacted]세무서장, [redacted]지방국세청장이 원고 주식회사 A에 한 별지 1 [2017구합59636] 기재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017구합57332: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이 2016. 6. 7. 원고 B, C에게 한 별지 1 [2017구합57332] 기재 납부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017구합60161: 피고 [redacted]구청장이 2016. 6. 14. 원고 주식회사 A에 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2009년 사업연도 귀속 94,697,030원, 2010년 사업연도 귀속 60,033,890원, 2011년 사업연도 귀속 143,966,500원, 2012년 사업연도 귀속 125,320,6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2014. 8. 13.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해외 거래처와 국내 거래처간 상품을 중개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사업을 한다.

나. 피고 [redacted]지방국세청장은 2016. 3. 9.부터 2016. 3. 25.까지 원고 회사의 2009 내지 2012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회사가 [redacted]의 E사(이하 'E사'라 한다)로부터 해외 계좌를 통하여 6,161,578유로(원화: 9,457,187,339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2017구합59635 관련)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은 이 사건 금원을 원고 회사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2016. 4. 1. 원고 회사에 별지 1 [2017구합56935] 기재와 같은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22

피고 [redacted]지방국세청장은 위 매출 누락을 대표자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2016. 4. 6. 원고 회사에 별지 1 [2017구합56935] 기재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하였다.

라. (2017구합57332 관련)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은 원고 회사가 법인세(2009 ~ 2012 사업연도) 1,863,641,460원을 포함하여 총 9건 합계 3,591,371,620원을 체납하자, 2016. 6. 10. 별지 1 [2017구합57332] 기재와 같이 원고 회사의 과점 주주인 원고 B, C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 세액 중 원고 B, C의 출자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통지하였다(다만, 원고 회사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관련 원고 B 111,990원, 원고 C 167,990원의 납부통지는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 원고 회사가 2015년 2기 부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다).

마. (2017구합60161 관련) 피고 [redacted]구청장은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이 위 다.항과 같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자, 2016. 6. 14. 원고 회사에 지방소득세(법인세분) 2009년 사업연도 귀속 94,697,030원, 2010년 사업연도 귀속 60,033,890원, 2011년 사업연도 귀속 143,966,500원, 2012년 사업연도 귀속 125,320,620원을 부과하였다(위 다. 라.항의 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 9, 10호증, 을 1 내지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22

1) 원고 회사와 E사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 회사는 중개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중개수수료를 수령할 권리가 없었다. E사는 자신의 해외경비(비자금) 마련을 원고 회사가 도와주면 그 대가로 처리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처리 완료시 나머지 5%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 회사는 E사의 요구에 따라 E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처리를 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 전부가 원고 회사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2) 피고 [redacted]지방국세청장은 [redacted]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의 요구에 의하여 이미 내린 결론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였다. 과세관청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할 적법하고 실질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 즉, 피고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의 수립과 질문조사, 장부, 서류, 물건 등에 대한 검사·조사 또는 제출을 명하는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금원이 원고 회사에 귀속되었는지 여부

가) 행정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같은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나) 갑 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회사와 원고 B(원고 회사의 회장)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의 범죄사실에 관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22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원고 회사가 E사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은 E사가 원고 회사에 지급한 중개수수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E사의 해외경비 마련을 위한 돈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6노3747, 대법원 2017도14014).

(1) Protocol No.2 초안(원고 B가 제출한 증거)은 사본에 불과하고 원고 B와 원고 회사의 법인 명판만 날인되어 있을 뿐이고 E사의 서명도 없어 완전한 문서로 보기 어렵다. 원고 B는 E사의 서명·날인이 기재된 원본 내지 완성본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원고 회사는 E사와의 에이전트 계약에 따라 무기중개업체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2007. 10. 11.경 기술도입계약(E사가 국내 업체에 자국의 무기 관련 기술을 수출하는 계약)을 성사시켰다. Protocol No.2 초안 제1항에는 에이전트 계약과 관련된 협력적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에이전트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램젯사업(RAMJET), 기술도입계약과 관련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3) F는 2008. 3. 3.경 E사에 에이전트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요청하는 공문 초안을 작성하기도 하였고, 원고 회사는 2009. 11. 12.부터 2012. 8. 20.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E사에 6~13회차 중개수수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 각 요청 공문과 ■■ G은행 계좌의 수취내역, 6~11회차 지급결의서에는 모두 '에이전트계약에 따른 커미션'이라는 명시적인 기재가 있다.

(4) Protocol No.2 초안 제6항에 의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E사로부터 받는 돈 중 15% 상당액만이 원고 회사의 몫이므로, 나머지 85% 상당액은 E사 또는 E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돌려줘야 하고, 제10항에 의하면 E사가 그 자금을 돌려받는 데 방해가 되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22

않는 한도 내에서 원고 회사에 자금관리 권한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 회사가 E사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은 국내로 반입되어 원고 B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사용되거나 정기예금 형태로 보관되다가 수표로 인출되었고, 수표로 인출된 돈도 원고 B의 개인 자금과 구분하여 보관되지 않은 채 원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도 E사가 Protocol No.2 약정 위반을 이유로 원고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5) Protocol No.2 초안 제8항에 의하면 위 협약은 E사와 원고 회사 양 당사자의 서명이 있는 날부터 유효한 것으로 되고 그로부터 3년간 효력이 있다. 그런데 원고 B는 2008. 3. 31. Protocol No.2 초안에 서명하여 E사에 전달하였고, 2008. 8. 1.경 E사의 내부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원고 B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Protocol No.2의 유효기간은 2008. 8. 1.경부터 3년이라 할 것인데, 위 협약의 유효기간이 지난 2012. 9. 6.경에도 원고 회사는 E사로부터 2,121,396유로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협약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6) 기술도입계약의 존재 자체가 [redacted]국의 군사비밀로 취급되었고, [redacted]국의 공식 입장은 람젯사업과 관련된 기술도입계약의 협상 및 체결 과정에 있어 에이전트(무기중개상)의 개입 없이 직접 계약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기술도입계약의 체결을 성사시켰더라도 E사로부터 받는 돈을 람젯사업과 관련된 무기중개수수료로서 명시적으로 수령할 경우 에이전트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향후 파장이 예상되거나 이후의 무기중개사업에도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E사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이 사건 에이전트계약과 관련된 무기중개수수료가 아니라는 취지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22

Protocol No.2 초안을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H는 'Protocol No.2를 검토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도 '검토 시 원고 회사가 E사로부터 무기중개수수료를 못 받게 되었다는 취지의 말은 듣지 못하였으며, 중개수수료가 [redacted]을 통해 들어오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E사가 횡령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원고 회사에 거액의 자금을 보내어 자유로운 관리처분권을 허여할 급박한 사정 내지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③ 만약 E사가 자신의 음성적인 자금 마련을 감추기 위해서 원고 회사와 사이에 Protocol No.2를 진정으로 체결한 것이라면, 음성적인 자금 마련 사실을 더욱더 확실히 감추기 위해서라도 에이전트계약의 종료를 명시적으로 선언할 필요가 없음에도, Protocol No.2 제1항에서 에이전트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명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E사가 원고 회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당초 기대한 중개수수료 액수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금액을 제시하면서 자신들의 해외경비 명목의 돈을 조성하는데 조력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 B가 이를 쉽게 받아들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rotocol No.2 초안을 원고 회사 측에서 마련하여 2008. 3.경 무렵 E사와 사이에 이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와 E사 사이에 실제로 Protocol No.2 초안과 같은 내용으로 이면약정이 합의 및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들은 위 형사재판에서 제출하지 않은 증거라며 갑 제31 내지 35호증을 제출하면서 확정 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2018. 8. 29.자 준비서면). 갑 제31 내지 35호증은 업무보고, 이메일, 수첩 사진 등인데, 위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22

한 사실과 이를 근거로 한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확정 판결의 사실 관계를 토대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관련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

가) 을 12 내지 21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피고 [redacted]지방국세청장은 [redacted]중앙지방검찰청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계좌 내역과 관련인들의 진술에 근거하여, 2016. 3. 9. 원고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2016. 3. 11. 원고 회사에 세무조사 통지를 하였고, 2016. 3. 15.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 C으로부터 청렴서약서 등의 서류에 확인을 받은 사실, 2016. 3. 18. 원고 회사에 범칙조사전환에 따른 조사범위확대 통지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 [redacted]지방국세청장이 위법한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나) 나아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227 판결 등 참조), 검찰의 수사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redacted]지방국세청장이 이를 토대로 세무조사를 하고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22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22

별지 1

[2017구합59635]

1. 법인세 부과처분

처분청	처분일	상대방	사업연도	세액(가산세 포함)(원)
[redacted]세무서장	2016. 4. 1.	주식회사 A	2009	787,174,020
			2010	499,034,990
			2011	1,196,729,190
			2012	1,041,734,200

2. 부가치세 부과처분

처분청	처분일	상대방	귀속시기	세액(가산세 포함)(원)
[redacted]세무서장	2016. 4. 1.	주식회사 A	2009년 2기	18,433,860
			2010년 1기	6,455,910
			2010년 2기	5,987,010
			2011년 1기	33,365,470
			2012년 2기	15,164,790

3.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처분청	처분일	상대방	귀속시기	대상자	소득구분	소득금액(원)
[redacted]지방국세청장	2016. 4. 6.	주식회사 A	2009년	B	상여	1,843,386,991
			2010년	B	상여	44,317,301
			2010년	I	상여	1,199,976,149
			2011년	I	상여	27,423,674
			2011년	C	상여	3,309,123,363
			2012년	C	상여	3,032,959,86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22

[2017구합57332]

1. 원고 B

처분청	처분일	주된 납세의무자	세목	귀속시기	부족액(원)
[redacted] 세무서장	2016. 6. 7.	㈜ A	법인세	2009	533,152,950
				2010	285,996,930
				2011	685,845,480
				2012	325,646,100
			부가가치세	2009년 2기	12,485,230
				2010년 1기	4,372,570
				2010년 2기	3,431,140
				2011년 1기	19,121,720
				2015년 2기	684,840
				2015년 2기	111,990

2. 원고 C

처분청	처분일	주된 납세의무자	세목	귀속시기	부족액(원)
[redacted] 세무서장	2016. 6. 7.	㈜ A	법인세	2009	82,023,520
				2010	103,998,870
				2011	249,398,350
				2012	488,469,150
			부가가치세	2009년 2기	1,920,800
				2010년 1기	672,690
				2010년 2기	1,247,680
				2011년 1기	6,953,350
				2015년 2기	1,027,300
				2015년 2기	167,99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22

별지 2

관계 법령

▣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3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3. 2. 23. 기획재정부령 제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22

로 처분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가산세)

⑧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2. 법인세: 「법인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법인세액을 말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22

3.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27조 및 제57조에 따라 더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세액

제81조의6(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